

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. 11. 20 선고 2019가단109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성

피 고 B

변론 종결 2019. 9. 25

판결 선고 2019. 11. 20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태백시 C 임야 66,689㎡ 중,
가. 별지 도면 표시 2, 3, 17, 16,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"ㄱ"부분 벽돌조판넬지붕 구조 주택 38㎡를, 같은 도면 표시 16, 17, 18, 19,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"ㄴ"부분 판넬조 판넬지붕 구조 주택 10㎡를, 같은 도면 표시 20, 21, 22, 23, 24, 25, 2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"ㄷ"부분 경량철골조판넬지붕 창고 39㎡를, 같은 도면 표시 36, 37, 40, 41, 3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"ㄹ"부분 경량철골조 구조 축사 19㎡를, 같은 도면 표시 37, 38, 39, 40, 3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"ㄴ"부분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구조 축사 57㎡를, 같은 도면 표시 54, 55, 56, 57, 58, 5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"ㄷ"부분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구조 축사 152㎡를 각

철거하고:

나. 별지 도면 표시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, 11, 12, 13, 14, 15, 1의 각 점을순차로 연결한 선내 "가"부분 521㎡를,같은 도면 표시 26, 27, 28, 29, 30, 31,32, 33, 34, 35, 2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"나"부분 398㎡를,같은 도면표시 42, 43, 44, 45, 46, 47, 48, 49, 50, 51, 52, 53, 4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"다"부분 512㎡를 각 인도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강원 태백시 C 임야 66,689㎡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고 한다)는 원래 피고의 소유 였는데,원고가 2015. 12. 14. 공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.

나.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, 3, 17, 16,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 한 선내 "ㄱ"부분 벽돌조 판넬지붕 구조 주택 38㎡, 같은 도면 표시 16, 17, 18, 19,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"ㄴ"부분 판넬조 판넬지붕 구조 주택 10㎡, 같은 도면 표시 20, 21, 22, 23, 24, 25, 2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"ㄷ"부분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창고 39㎡, 같은 도면 표시 36, 37, 40, 41, 3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선내 "ㄹ"부분 경량철골조 구조 축사 19㎡, 같은 도면 표시 37, 38, 39, 40, 37의 각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"ㄴ"부분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구조 축사 57㎡, 같은 도면표시 54, 55, 56, 57, 58, 5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"ㄴ"부분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구조 축사 152㎡(이하 통칭하여 '이 사건 각 건물'이라 한다)의 각 소유자이다.

다. 한편, 이 사건 각 건물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, 11, 12, 13, 14, 15,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"가"부분 521㎡, 같은 도면 표시 26, 27, 28, 29, 30, 31, 32, 33, 34, 35, 2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"나"부분 398㎡, 같은 도면 표시 42, 43, 44, 45, 46, 47, 48, 49, 50, 51, 52, 53, 4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"다"부분 512㎡(이하 통칭하여 '이 사건 각 계쟁토지 부분'이라 한다) 위에 소재하고 있다.

라.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가소27호로 치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, 2016. 11. 22. '피고는 원고에게 2016. 1. 1.부터, 이 사건 각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각 계쟁토지 부분을 인도할 때까지 월 81,26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'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, 위 판결(이하 '이 사건 판결'이라 한다)은 그대로 확정되었다.

마. 또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카합346호로 위 2016가 소27호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였고, 위 법원은 2017. 4. 17. '피고가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3,063,220원임을 확정한다'는 결정을 하였다.

바. 피고는 2016. 1. 1. 이후부터 현재까지 원고에게 200,000원만 지급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, 3, 5, 6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판 단

가.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1)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각 건물은 모두 피고의 소유에 속하였다가 이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만 공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바,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각 계쟁토지 부분에 대하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.

2) 한편, 이 사건 판결에서 피고가 법정지상권자로서 지상권설정자인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료가 2016. 1. 1.부터 월 81,260원씩으로 정해졌으나,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200,000원만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, 피고는 지상권자로서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, 피고의 위 법정지상권은 민법 제287조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로 인하여 소멸하였다.

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각 계쟁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.

나.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

1) 이에 대하여, 피고는 원고가 피고 또는 이 사건 각 건물의 세입자인 D 등으로 하여금 위 각 건물 중 축사 2동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진입로에 철망을 치는 등 그 통행을 방해하였기 때문에 원고에게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.

살피건대, 을 제1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그 외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각 건물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그 통행을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나아가 피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자인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그 통행방해금지 등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, 지상권설정자인 원고에게 그 지료의 지급을 거절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.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2) 또한 피고는, 원고를 상대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자로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한다.

그러나 지상권자의 지료연체를 이유로 토지소유자가 그 지상권소멸청구를 하여 이에 터잡아 지상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민법 제283조 제2항 소정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바(대법원 1993. 6. 29. 선고 93다10781판결참조),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지료 연체로 인하여 위 법정지상권이 소멸한 이상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.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.

3.결 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.

판사 박동규

별지